

# 장애인건강연구소 규정

시행 : 2024.06.26.

## 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부설 장애인건강연구소(이하 '본 연구소'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연구소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관련 제 분야에 대해 인문학, 의학, 사회과학 등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더 나은 지역사회 보건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본 연구소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관련 제 분야에 대해 인문학, 의학, 사회과학 등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더 나은 지역사회 보건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소재지)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 의과대학 내에 둔다.

## 제2장 조직 및 임원

### 제5조(조직)

① 본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.

1. 연구소장
2. 자문위원회
3. 운영위원회
4. 장애인건강권연구부
5. 의학교육부
6. 빅데이터 및 미래의료부
7. 지역사회보건부
8. 연구기획부

② 각 부의 구성원은 소장이 임명한다.

### 제6조(연구소장)

- ① 연구소장(이하 '소장'이라 한다)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, 학술활동 등 연구소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.
- ② 소장의 임명은 본교 교원 중에서 연구소 내 소관위원회의 심의와 유관 대학(원)장 또는 부서장의 추천,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장이 한다.
-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연임 시에는 대학(원)장 또는 부서장 추천, 학술연구운영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### 제7조(특별 연구원)

- ① 소장은 교내외 인사 중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② 특별 연구원은 소장이 정하는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

### 제8조(자문위원회)

- ①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 및 주요 활동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.
-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소장은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 5인 이상을 자문위원회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④ 필요에 따라 외부 기관에 소속된 자를 자문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#### 제9조(운영위원회)

- ①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  - 1. 연구소의 조직, 운영체계 및 기본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  - 2. 연구소장 추천
  - 3. 연구소의 연구방향 및 연구계획 결정
  - 4. 연구소 인사 관련 사항
  - 5. 예산 및 결산
  - 6. 연구소 관련 제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
  - 7.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② 운영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# 제10조(각부 업무)

- ① 연구기획부는 본 연구소의 운영업무를 수행한다.
- ② 장애인건강권연구부는 장애인 환자중심 의료 실천을 위한 의료인문학적 관점에서 건강권 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.
- ③ 지역사회보건부는 장애인의 건강증진, 소외계층 보건의료지원사업 등 장애인 대상 지역 사회보건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.
- ④ 빅데이터 및 미래의료부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여 관련 사회문제의 융합적 해결방안 연구를 수행한다.
- ⑤ 의학교육부는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과 의료현장 적용을 위해 의학교육 및 의료인문사회의학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, 적용을 수행한다.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 연명의료관련 업무를 수행한다.

제11조(구성원) 본 연구소에는 「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상임 연구원, 전문 연구원, 객원 연구원, 일반 연구원, 연구보조원을 두며, 필요에 따라 연구소장은 특별 연구원, 비상임 연구원, 학술연구교수,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.

#### 제3장 재정 및 기타

제12조(재정)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교내외 연구비, 지원금, 용역, 교육프로그램 운영 수입금, 기부금, 기타 연구 보조비 등으로 충당한다.

제13조(회계연도)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.

#### 제14조(예산 및 결산)

- ① 본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.
- ② 교비 또는 대외과제·용역 수주 등에 따른 경비 집행은 본교 관련 규정을 따른다.

제15조(보칙) 본 규정 및 대학 제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24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